

③ 농업경영회생자금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.

I 사업개요

□ 목 적

-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

* 근거법령 : 「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의2(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의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(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)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(전업농 규모의 1/2이상)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

*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)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 : 고정 1%, 5년거치 7년상환, 개인 20억원(법인 30억원) 이내 지원
- '23년 예산 : 15,000백만원(융자규모)

□ 사업 신청

- 장소 : 농협은행 및 지역 농·축협
- 신청기간 : 연중

□ 대상자 선정

- 사업 신청 시 농협의 경영평가단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농업금융정책과	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	044-201-1760 044-201-1759
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	02-2080-7590 02-2080-7586

I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.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
- 제외대상 : 농협,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,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. 지원대상 농업인

-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가축질병,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(전업농 규모의 1/2이상)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
- 단,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/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(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포함)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
- *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
- * 농업경영위기(예시) : <별표 1>
- * 준전업농 규모 기준(예시) : <별표 2>

나. 지원제외 대상자

- 본인과 배우자 모두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(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)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제외대상 : 농협,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,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
 - 비농업용 부동산(1주택 제외 주택, 상가, 대지, 잡종지)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. 다만,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 주택,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(단,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(이하 “경영평가위원회”라 함)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
* 비농업용 부동산은 “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”로 확인

3. 지원대상

-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, 향후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, 농업협동조합,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(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)
 - 단,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
 -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
-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,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(사료대·종묘·비닐·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: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, 연체이자 감면)
 - 단,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,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(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)까지 포함
- 농경지,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,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으로 농업용 대출 대환 및 신규 자금(단, <별표1> 농업경영위기 사유로 인한 피해인증자료,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(공제)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)
 -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(된)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·공제금 수령액 제외
-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'01.1.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(할) 농업용 자금

- 시설 및 개보수 자금
-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. 단,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.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
 - *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

4. 지원자금의 사용·용도

-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
 - 회생가능 :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
 - 회생불능 :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
- * 다만, 순수연체이자는 지역 농축협, 농협은행 시·군 지부(또는 농협은행 지점) 등(대출 취급기관, 이하 “대출취급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

5.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

가. 경영평가

-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(지역 농·축협)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
-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,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(지역 농·축협)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
-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
 - ※ 자금 신청액이 4억원이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를 통해 지원한다. 다만,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,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.

나. 지원조건

- 지원비용
 - 경영회생자금 :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, 융자 90%이내, 자부담 10%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
 - 인수자금 :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% 이상으로 함
- 대출금리 : 연리 1%(이자 1년 후취)
- 대출기간 :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-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재지원 불가. 단,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
- 지원한도 : 회생(또는 인수)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
 - 다만, 위 금액은 20억원(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)을 초과할 수 없음

III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가. 농림축산식품부

-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

나. 농협은행

-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

다. 농협은행 및 지역 농·축협

-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

라. 지자체

- 양봉 농가에 대한 '양봉 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'(별지 서식 1호) 발급(양봉 품목에 한함)

마. 해당 농업인

-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,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(지역 농·축협, 농협은행 시·군지부 등)에 신청
 -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봉 농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'양봉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'와 자구계획서,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

※ 다만, 2029.1.1. 이후에는 지자체 확인이 아니라 양봉농가가 매출액, 소득 관련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함.

* 신청 시 유의사항 : 지원제외대상 요건('II.2. 지원자격 및 요건' 부분 참조)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,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2. 사업자 선정단계

가. 경영평가위원회

-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
 -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지부(또는 농협은행 지점) 또는 지역 농·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 -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·정밀)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 -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는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
- 구 성 :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
 - 구성원은 농업인, 공무원, 농협은행·농업협동조합·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,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
- 임 무
 -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, 자구계획 평가 결과,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
 -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
-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지부(또는 농협은행 지점) 및 농업협동조합(지역 농·축협)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·운영
- 경영평가 결과 “정상”, “회생가능”, “회생불능”으로 유형별 구분
 -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: 재무구조의 건전성,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
 -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
- 평가사항 : 재무구조의 건전성,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, 자구계획의 현실성,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
- 평가유형
 - 정 상 :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
 - 회생가능 :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
 - 회생불능 :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(구조조정대상 농업인)

3. 유형별 자금 교부 및 집행

가. 회생가능 농업인

- 경영회생자금 지원
 - 대 상 :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
 - 지원방안
 - 1) 신 청 :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,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(지역 농·축협, 농협은행 시·군지부 등)에 신청

2)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

-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지부(또는 농협은행 지점) 및 농업협동조합(지역 농·축협)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
-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-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는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-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

3)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

-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여부를 심의

-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

4) 자금 지원

-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
-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
- *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

나.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

○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

- 대 상

-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·건물·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(사용)할 수 있는 농업인
-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(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)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, 농업용 토지·건물·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(사용)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

- 지원방안

- 1) 신 청 :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(조합 등)에 제출

2)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

-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(경영평가표 등)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지부(또는 농협은행 지점) 및 농업협동조합(지역 농·축협)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
-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-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는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

3)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

-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,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

4) 자금 지원

-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
-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

5)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

-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(시·군 등)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

※ (참고) 농신보·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

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으시 보증비율은 85%임(부분보증제)
-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(90% 보전)임
 - 단,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. 다만,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(대환 포함)로 한다.
-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(신용대출)에 의한 신용대출한도(3,000만원)의 적용을 배제함
 - 단,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

4. 이행점검단계

가. 사후관리

농협은행 · 지역 농축협

-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, 인수·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
 -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(모니터링)
 - 필요시 「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」, 「농업금융 컨설팅」 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
 -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(주관)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·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

나. 제재

농협은행 · 지역 농축협

- 점검결과 자구계획,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
-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
 - 단, 비농업용 부동산은 '07.7.1 이후, 골프회원권은 '08.12.1 이후 신규 대출 농가에 한함
-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

<별표 1>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-농업경영위기 사유

농업경영위기 사유

- ① 재해 :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
 -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, 우박, 서리, 조수, 대설, 한파, 폭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, 일조량 부족, 유해야생동물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),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
 - * 농작물, 산림작물, 가축, 농업용 시설,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10호, 제11호의 정의를 준용
- ② 그밖의 사유
 -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, 낙뢰 등에 의한 화재
 -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(할) 경우
 -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
 -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(비료·농약·사료·유류·농업용 시설자재 등) 가격이 15%(청년농의 경우, 10%)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(도매시장, 산지시세)이 15%(청년농의 경우, 10%)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
 - * 가격하락,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, 공판장가격정보,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
 -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(전년평균 대비 15%(청년농의 경우, 10%) 하락)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
 -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
 -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,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 - * 사업시행기관(한국농어촌공사)의 확인서 제출 필요
 - 본인 혹은 농업인력의 감염병 확진, 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
 - * 보건당국,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필요
 - 감염병의 영향(판매처 폐쇄, 급식 납품 취소, 농업인력 확보 애로 등)으로 감염병 발생 이전 연도 대비 생산량, 판매량, 또는 매출액이 15%(청년농의 경우, 10%) 이상 감소한 경우
 - * 계약 취소 공문, 출하량 감소, 판매처 폐쇄 공문 등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
 -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,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%(청년농의 경우, 10%) 이상 감소한 경우
 - *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봉군 수를 기준으로 조사할 한재 봉군 수가 50% 이상감소한 경우 (일몰 '28.12.31)
 -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로 인정하는 경우 등
 - * 청년농 기준 :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

IV 평가 및 환류

-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지원실적·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,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

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

품 목	규 모	비 고
미 곡	1.5ha이상	
밭작물(식량류)	1.5ha이상	
채 소		
- 노지채소	1.0ha이상	- 유리온실은 300평이상
- 시설채소	900평이상	-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
과 수	0.75ha이상	
화 훼		
- 절화류	시설 600평이상	-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
- 분화류	시설 450평이상	-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
특용작물		- 기타 버섯 품목
- 느타리버섯	100평이상	·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
- 양송이버섯	150평이상	·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
- 팽이버섯	60평이상	
- 약용작물	1.5ha이상	
- 인 삼	1.5ha이상	
축 산		
- 한 우	25두이상	- 번식우는 33두 이상
- 젖 소	25두이상	- 착유마리수 기준
- 돼 지	500두이상	-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
- 닭, 오리	15,000수이상	
- 흑염소	250두이상	- 수컷 기준
- 꽃사슴	65두이상	- 수컷 기준
- 레드미어사슴	100두이상	
- 엘크사슴	55두이상	
- 양봉	100봉군 이상	-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100봉군 이상
- 기타 가축		-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
산 림		
- 산림경영	5ha이상	- 조림면적 기준
- 묘목생산	500평이상	
- 밤	1.25ha이상	

※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,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
 ※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% 경작지에 포함(증빙자료 :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 등)

V 주요변경사항

구분	현행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
II. 주요내용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	* 다만, 순수연체이자는 <u>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</u>	* 다만, 순수연체이자는 <u>지역 농축협, 농협은행 시·군 지부(농협은행 지점) 등 (대출취급기관, 이하 “대출취급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</u>	대출취급기관의 세부 설명 추가
II. 주요내용 5.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가. 경영평가	○경영평가위원회는…(중략)…결정 < 신설 >	○경영평가위원회는…(중략)…결정 ※ 자금 신청액이 4억원이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<u>생략하고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를 통해</u> 지원한다. 다만,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,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.	피해농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예외규정 신설
2. 사업자 선정단계가. 경영평가위원회	-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, 시·군지부 또는 지역 농·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시·군지부 또는 지역 농·축협 4억원 이하	-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, 영업본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4억원 이하는 <u>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로</u> 지원하되 <u>대출취급기관에서</u>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는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	신청규모 4억원 이하의 심사절차 간소화 심사절차 간소화에 따른 예외규정 신설

구분	현행(2022)	변경(2023)	변경사유
3. 세부계획수립·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. 회생가능 농업인	3. 세부계획수립·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. 회생가능 농업인 2)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평가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 시·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4억원 이하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	3. 유형별 자금교부 및 집행 가. 회생가능 농업인 2)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평가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	문구수정 신청 규모 4억원 이하의 심사절차 간소화 및 이에 따른 예외규정 신설
나.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는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	나.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는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2)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평가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 시·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4억원 이하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	나.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는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2)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평가 * 중앙본부 6억원 초과, 영업본부 4억원 초과~6억원 이하,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(사전+정밀)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 * 단, 관할 시·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	신청 규모 4억원 이하의 심사절차 간소화 및 이에 따른 예외규정 신설